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 265p (4)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	개념, 공식-설명	<p>(4)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</p> <p>(기존 내용과 동일)</p>	<p>(4)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 : 마지막에 판례변경 추가</p> <p>[판례변경] ↗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소극)</p> <p>'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'는 법리(이하 '추정 법리'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. … (중략) …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대판 1967.2.7. 66다2173, 대판 1992.5.22. 92다4796, 대판 1999.1.26. 98다46808, 대판 2013.5.23. 2013다12464, 대판 2022.5.12. 2021다244, 251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(대판[전합] 2025.7.24. 2023다240299 - 다수의견).</p>
		수정 사유	최신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